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1. 11. 8.
제 안 자 : 김준석 의원

1. 수정이유

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령의 개정 추세에 따라 여자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규정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골자

○ "여자공무원" ⇒ "여성공무원"으로 수정함.
(안 제23조 제2항, 제3항, 제4항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3조 제2항, 제3항, 제4항 중 "여자공무원"을 "여성공무원"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2항 중 "여자공무원"을 "여성공무원"으로 한다

수 정 안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23조(특별휴가) ① (생략)	제23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임신중의 **여자공무원**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	②임신중의 **여성공무원**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
③**여자공무원**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.	③**여성공무원**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.
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**여자공무원**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.	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**여성공무원**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.
⑤내지⑩ (생략)	⑤내지⑩ (현행과 같음)
부 칙	부 칙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출산휴가 확대에 따른 적용례)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**여자공무원**부터 적용한다.	②(출산휴가 확대에 따른 적용례)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**여성공무원**부터 적용한다.